

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 재중

독촉 내용

독촉장

오른쪽 독촉장에 적힌 의무상환액이 체납되었으니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오른쪽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-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2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
-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
- 장기미상환자의 경우,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서도 상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.
- 이 독촉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
(☎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납 부 번 호	세무서 코드	연 월	소득구분	발행번호
성 명 (상 호)		계좌번호		
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귀속 연월	교육부 소관	취업 후 학자금상환
주 소 (사 업 장)				

독촉납부기한		년 월 일까지	
계			
년 월 일까지	금액		
년 월 일까지	금액		

위 금액을 위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 (인)

❖ 납부 방법(납부가능시간: : ~ :)

-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를 통한 전자납부
- 온라인 계좌이체, CD/ATM 계좌이체
-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무통장 입금(계좌이체)

※ 다만, 은행창구를 통한 계좌이체는 금융기관별 영업시간 내에 납부 가능함

❖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창구 납부는 무통장 입금형식(계좌이체)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❖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 건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